아동권리기반 AI 헌장

Child Rights-Based AI Charter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과 실천의 약속

초록우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아동권리기반 AI 헌장

(Child Rights-Based AI Charter)

구분	조항명
전문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기본 원칙	
제4조	인간 존엄성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제5조	AI 환경에서의 비차별과 개별 아동의 특성 존중
제6조	AI의 투명성 확보
제7조	AI의 안전성과 인간의 책임
제3장 AI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제8조	공정한 접근과 배움·성장의 권리
제9조	AI에 관한 아동의 의견 존중·참여와 권리 행사
제10조	AI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피해 구제
제4장 안전하고 아동권리 친화적인 설계와 이용	
제11조	아동 안전을 확보하는 AI 설계
제12조	AI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안전장치
제13조	아동권리영향평가
제14조	안전한 이용을 위한 AI 리터러시
제5장 주체별 책임과 역할	
제15조	국가와 공공기관
제16조	개발·제공·운영 주체
제17조	학교·가정·사회
제6장 헌장의 이행과 발전	
제18조	교육·활동 현장에서의 실천
제19조	사회적 확산과 협력
제20조	정기적 점검과 개선

전문

인공지능(AI)은 아동이 배우고 놀이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AI는 모든 아동이 잠재적 역량을 발현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유해한 정보, 차별과 편향의 재생산, 개인정보 침해, 정서적 의존과 같은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아동권리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청소년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가치와 취지를 존중한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이며, 어떠한 기술 발전이나 AI의 유용성도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헌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정부 정책을 대체하는 규제 문서가 아니며, 그 취지에 동참하는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참고하고 실천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선언이다.

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원칙과 실천의 약속으로 이 헌장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에 기초하여,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AI(인공지능)”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추천·결정·콘텐츠 생성 등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말하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도 포함한다.
③ “AI 리터러시”란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위험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윤리적 역량을 말한다.
④ “아동 이용 가능성이 높은 AI”란 아동이 이용하거나 그 결과가 아동의 권리·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AI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헌장은 연구·기획·설계·개발·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학습·검증·조달·배포·운영·이용·모니터링·평가·수정·업데이트 및 폐기에 이르는 AI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헌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규제기관·법 집행기관, 기업·연구기관·표준개발기관,

교육기관·학계·시민사회단체·비정부기구, 교사·보호자 등 AI의 개발·제공·운영·이용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각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참고하고 실천할 아동권리 원칙을 제시한다.

③ 아동은 이 헌장에서 권리와 참여의 주체이며,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장 기본 원칙

제4조 (인간 존엄성과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① AI의 개발·제공·운영과 이용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AI로 인하여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체는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AI 환경에서의 비차별과 개별 아동의 특성 존중)

① 아동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언어, 종교,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부모의 배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AI의 이용·접근·평가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AI가 아동의 연령, 성숙도, 인지적·정서적 발달단계 및 발달 역량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체는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보호 조치, 안전 설정 및 포용적 지원을 마련하되, 이러한 맞춤형 조치가 아동의 주체성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AI의 투명성 확보)

① 아동에게 AI를 제공하거나 아동의 AI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AI의 주요 기능, 이용 방법, 권장 또는 이용 가능 연령, 한계 및 오류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아동과 보호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체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AI에 대하여 해당 AI가 인간이 아님을 아동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AI를 이용하여 생성·변형 또는 합성된 콘텐츠는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가 그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7조 (AI의 안전성과 인간의 책임)

①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예방·완화하며, 연령, 발달단계 및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성·보안성·견고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AI로 인한 아동의 위해와 권리 침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AI의 결과물이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간이 그 과정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AI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 AI의 개발·제공·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 주체가 가진 권한과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따라 부담하며, 그 책임을 아동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제3장 AI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제8조 (공정한 접근과 배움·성장의 권리)

① 모든 아동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호 조치 아래 AI를 통한 혜택과 교육·정보·문화적 기회 및 이에 필요한 기기·연결 환경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각자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접근 가능한 설계, 다국어 지원, 장애·경제·지역 등 여건에 따른 접근 지원과 같은 포용적 조치를 마련하되, 이러한 조치가 아동을 불필요하게 배제하거나 주체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게 AI를 활용하여 배우고 창작하며 자신의 사고와 역량을 기를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AI를 활용한 자신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에 관한 정당한 권익을 존중받는다. 관련 주체는 저작권,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AI에 관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참여·권리 행사)

① 아동은 AI 환경에서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AI의 전 생애주기 및 관련 서비스·기술·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관련 주체는 아동참여기구, 워크숍, 권리 옹호 활동 등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참여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이며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과 소외가 없어야 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의견도 적극적이고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은 참여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는다.
④ 아동은 자신의 의견이 검토된 경과와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안내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AI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피해 구제)

① 아동은 AI를 통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관련 주체는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발견·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마케팅 도구와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을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상품·서비스 또는 위험한 상호작용으로 유인하지 않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아동 또는 아동을 지원·대리하는 사람은 AI로 인한 위험·피해 및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적·비사법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신속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장 안전하고 아동권리 친화적인 설계와 이용

제11조 (아동 안전을 확보하는 AI 설계)

①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설계 단계부터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예방·완화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 관련 AI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발·제공·운영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예측·예방하는 안전 중심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 AI는 연령에 적합한 설계와 아동 이용 시의 기본 보호 설정을 갖추어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부가 기능이 아닌 설계의 전제 조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2조 (AI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안전장치)

①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아동과 감정을 주고받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AI(이하 “감정교류AI”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설계 목적과 관계없이 아동이 대화 상대가 AI임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교류AI에서 자해·타해·폭력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화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발달단계에 맞는 안내를 제공하고, 아동의 안전과 의사를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교사 등 성인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에 연결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감정교류AI를 아동의 정서적 의존을 유도·강화하거나,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아동을 조종·설득하거나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으로 설계·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아동권리영향평가)

①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아동 관련 AI가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 영향이 중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도입 또는 중요한 변

경 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이하 “아동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하고, 확인된 위험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영향평가에는 아동권리와 아동발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에서는 편향·차별, 안전, 프라이버시, 접근성 등 주요 위험을 점검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의견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권리영향평가는 운영 과정에서 AI가 실제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설계와 운영의 보완에 반영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한 이용을 위한 AI 리터러시)

① 아동은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위험을 발달단계에 맞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받는다.

② AI 리터러시 교육은 위험 예방의 책임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안전한 AI 환경 조성의 책임은 관련 주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함께 부담한다.

③ 이 헌장은 아동이 AI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돕는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주체별 책임과 역할

제15조 (국가와 공공기관)

①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거나 아동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는 AI의 설계·개발·배포·운영을 예방·제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AI 위험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과 피해 지원·구제 절차가 법률과 제도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는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령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하고,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③ 국가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와 행정에 AI를 도입할 때 이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려하고, 조달·운영 기준에 아동권리 보호를 반영한다.

제16조 (개발·제공·운영 주체)

①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이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AI의 기획·설계·개발·제공·운영 전반의 기본 기준으로 삼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한다.

② 제1항의 주체는 아동 관련 AI에 제11조의 안전 중심 설계를 적용하고, 감정교류AI에는 제12

조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제13조에 따라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제17조 (학교·가정·사회)

① 학교와 교육당국은 교육 현장에 AI를 도입할 때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역할을 존중하고, 교사가 안전·윤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가정과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AI 이용을 지도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며, 보호자 스스로 AI 리터러시를 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가정은 아동이 정서적 과의존, 안전을 위협하는 대화, 사이버 괴롭힘 등의 문제를 겪을 때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한다.
④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는 AI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권리 옹호 활동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장 헌장의 이행과 발전

제18조 (교육·활동 현장에서의 실천)

① 이 헌장은 학교·아동 교육시설 등 교육·활동 현장에서 아동 대상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참여 워크숍 및 권리 옹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자와 활동가는 현장에서 헌장의 원칙을 적용할 때 아동의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현장 실천 과정에서 수집된 아동과 교육자의 경험 및 피드백은 헌장의 보완과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④ 교육·활동 현장에서는 헌장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일상에서 접하는 생성형 AI, 감정교류AI, 추천 알고리즘 등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체험적·참여적 실천 학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적 확산과 협력)

① 이 헌장에 동참하는 주체는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헌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문안과 실천 해설서를 제작·보급한다.
② 정부, 기업, 학교,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는 아동권리에 기반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학제적·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헌장의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AI를 개발·제공·운영하는 주체는 이 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자체 윤리 강령, 서비스 정책 및 개발·운영 지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 이행 노력을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④ 이 헌장의 제정·운영 주체(초록우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헌장의 원칙과 정신이 국가 AI

정책, 법·제도, 기술 표준 및 국제 협력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 (정기적 점검과 개선)

① 이 헌장의 제정·운영 주체는 AI 환경의 변화와 헌장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헌장에 동참하는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정·운영 주체는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헌장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
③ 제정·운영 주체는 아동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와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식으로 알린다.

2026. 10. 12.

초록우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집필

박미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이인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형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중앙대학교 교수

김희진
김희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기획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노경
초록우산

이상원
초록우산

초록우산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의 『아동권리기반 AI 헌장』 본문은 단체와 개인 등 누구나 출처와 공식 문서명을 밝히고 자유롭게 인용·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로고의 사용이나 공식 승인·제휴로 오인될 수 있는 이용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본 헌장은 제정 시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제정·운영 주체가 공식 개정본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